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디비투자파트너스(주)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24. 02. 2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수료 부과 원칙)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라. 성과수수료 :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투자자문에 관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동 지침은 디비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보수에 적용된다.

1.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수행과 관련된 운용보수
2.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와 수행과 관련된 기본 및 성과 수수료
3. 상기 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비용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
5.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
6.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7.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
8. 사모 간접투자기구 수익자 및 일임 고객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

제6조(수수료 결정 절차)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위원장: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참석자: 운용, 운용지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마케팅)

팅, 세일즈 및 IT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 상품의 특성 및 업무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증권 신고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7조(공시)

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자문 및 일임에 관한 수수료 기준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